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01.2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01.09.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9.01.12.
- 다. 상정일자 : 제142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9.01.21)
상정, 심사, 원안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강 창 수 가정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구민들에게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자 현재의 이용료 징수 방법을 연회비제로 전환하고, 장난감대여점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규저구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회원등록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조제2항)

지역제한 없이 회원 등록한 자에 한하였던 회원자격을 서울특별시로 제한하여 대여점 이용자격을 명확하게 규정

- 2) 연회비제로 대여점 이용자 이용률 제고(안 제9조제1항)
이용료 징수제에서 연회비제로 변경하여 대여점 이용률 제고
- 3) 감면대상 이용자 확대 실시(안 제9조제2항, 제4항)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셋째아 가정과 자원봉사자에 감면이용 대상 확대
- 4) 대영 수량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안 제9조제5항, 제6항 신설)
1인당 대여수량 및 기간을 정하여 반납지연 회원에게 일정한 연료를 부과하여 운영·관리 철저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동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장난감대여점 회원가입대상을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인으로 규정하여 이용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현재의 이용료 징수방법을 연회비제로 전환하였으며, 연회비제 감면 대상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장난감대여점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 장난감대여점 운영(2008.3.21-8.30)결과 타자치구에 비하여 장난감대여료가 비싸고, 대여료 결제시 교통카드(T-money) 사용상의 불편 및 주차공간의 협소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이용료 징수방법이 연회비제로 변경되면 이용률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대여 장난감의 질적 향상 및 품목확대,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조례 제4조에 의한 장난감대여점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